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정 보기술의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은 애초에 희망했던 목표와는 달리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생산해내고 있다. '정보의 완전한 개방과 공유'의 원칙은 정보를 생산하는 자,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간의 모순된 이해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지 못한 채 순수한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누구도 독점하고 있지 않은 공중에 공개돼 있는 개별적 사실 또는 정보들을 수집·조작·저장해서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경우 그 정보의 덩어리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쉽고 빠르게 복제·배포하거나 변형해 활용, 제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개발의욕을 상실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에 반해,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집합에 대해 저작권에 상응하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

연재순서

- 7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
- 8 BM 특허
- 9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10 P2P 분쟁 -소리바다사건-
- 11 하이퍼링크의 법적 문제
- 12 SW 입차제도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라도 그것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인적·기술적 투입을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운 접근 및 활용을 상당히 제한해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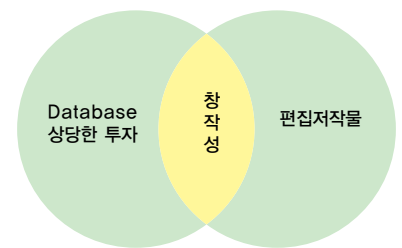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2의 4호).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공중에 공개된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 그 자체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수집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검색이 용이하도록 가공·정리된 편집물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편집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립된 제한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2003년 개정법).

〈그림〉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되는 DB와 편집저작물의 관계



편집저작물이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독립된 저작물을 말한다(제2조 제12의 3호). 편집저작물이 구성하고 있는 개별 소재들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편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다만 그 개별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편집저작물에는 백과사전·신문·잡지·문학전집·판례집·영어단어장·광고전화번호부·직업별 전화번호부·자동차운전면허 시험문제집·캘린더 등의 다양한

예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그 자체가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객관적 사실 또는 정보를 단순히 집적해 뒀을 뿐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찾지 못한다(남효형·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237면). 전화번호부의 인명편과 같이 단순히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배열한 데이터베이스, 법률정보를 법역별로 배열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라이브리 등 경우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집저작물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라도 그것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인적·기술적 투입을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내용과 보호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하며(제2조 제12의 5호), 이러한 제작자에게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73조의4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개별 소재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

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게 된다(동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저장·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생성·검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된다.

또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제73조의3 제2호). 그러나 이 조항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란 인터넷 등에서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모든 편집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디지털화시대에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상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한편 이를 유·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와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이 필수적인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조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저작권법 I, 사법연수원, 2004, 143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제73조의6 제1항). 또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동조 제2항). 1988년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소재의 무단추출과 재이용 행위를 15년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의 경

우보다 보호기간이 긴 편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양도·이용허락·법정허락·거래제공·질권설정·등록·공동제작자의 권리·권리제한사유에 관해서는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기타 데이터베이스 보호수단

기술적 보호조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타인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출하는 행위에 대해 암호화기술, 디지털워터마크 등의 기술적 보호수단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s)란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의 불법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통제장치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그밖에 동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즉 상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있다(제92조 제2항). 또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을 거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98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역시 상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제30조 제1항)와 무력화 장치 등의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46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05년 7월호 ‘디지털콘텐츠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참조하길 바란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또 다른 보호수단으로서 2001년 12월에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를 보호객체로 하여 그 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일정한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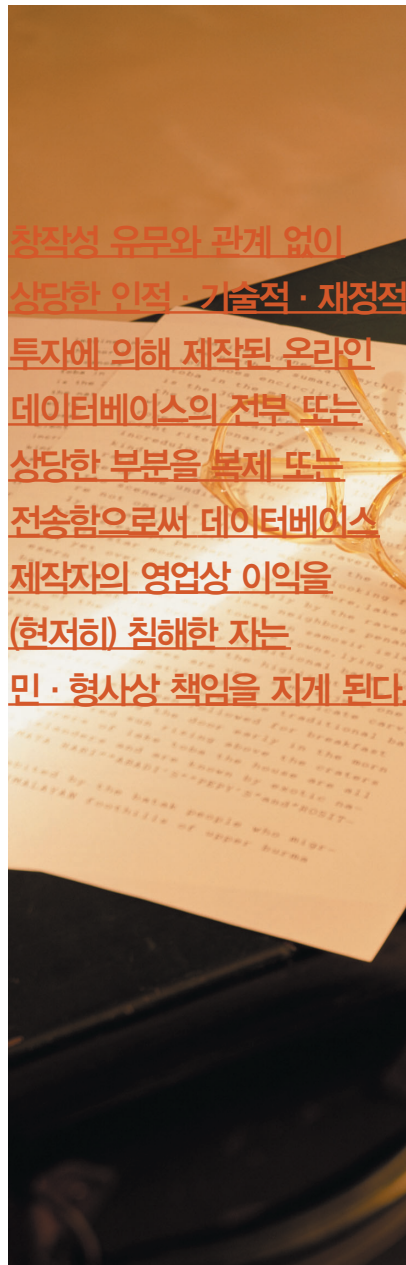
동법 제18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해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성 유무와 관계 없이 상당한 인적·기술적·재정적 투자에 의해 제작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법에서 보호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것에 한정되며 CD-ROM과 같이 오프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된다. 이 법에 규정된 보호기간은 디지털콘텐츠가 제작돼 표시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도 기술적 보호수단을 무력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통제형(copy control)’에 한정된 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접근통제형(access control)’까지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해설서, 정보통신부, 2002, 65-68면).

ProCD 사건

- ProCD, Inc. v. Zeidenberg, 86 F.3d 1447 (7th Cir. 1996) -

이 사건은 1991년 Feist 판결(Feist



Publishing, Inc. vs. Rural Telephone Service, 499 U.S. 340)에서 미국 대법원이 전화번호부 인명편에 대해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편집저작물성을 부인한 결정을 내린 이후,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무수한 논의의 한 성과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이다.

원고인 ProCD는 미국 전 지역에서 약 3,000개가 넘는 전화번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용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함께 CD-ROM (‘SelectPhone’)에 담아 판매됐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무

려 1,000만 달러이상의 비용이 들었으며,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 이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배열돼 있고, 우편번호·주소·SIC 코드 등의 정보도 함께 포함돼 있어서 생산업자나 소매업자가 별도의 가격을 지급하면 특정된 우편주소 리스트 등과 같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패키지는 쉬링크랩 계약(shrink-wrap license)에 의해 판매됐는데, 즉 그 계약서에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제한과 소프트웨어의 양도, 대여 및 네트워크에서 동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피고는 SelectPhone 패키지를 구입한 뒤 수록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고 스스로 제작한 검색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제7 연방항소법원은 우선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에 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하고 새로운 구성체계를 바탕으로 대량의 정보가 수록돼 있음을 발견하면서도 Feist 판례의 영향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동 법원은 당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를 금지하는 쉬링크랩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계약상 보호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

제7 연방항소법원은 주법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저작권의 일반 범위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문제(Doctrine of preemption: 연방법 우선의 원칙)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저작권과 달리 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계약상 조건들은 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에 있어서 사인의 중요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쉬링크랩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의 거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배타

적 저작권과 상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동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도 있었다. 즉, 이 판결은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작자가 쉬링크랩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과 같은 충분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Neil Weinstock Netanel, Copyright and a Democratic Civil Society, 106 Yale L.J. 283, 385 (1996)). 또한 ProCD의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는 Feist 사건의 전화번호부와는 구별되는 점이 많으므로 그 창작성 여부를 따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1996년 5월 미국의회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 즉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물을 수집·조립·검증·조직 또는 제시함에 있어서 인적 자원·기술적 자원·재정적 또는 다른 자원을 질적·양적으로 상당히 투자된 경우에 그 결과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발췌 및 이용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H.R. 3531 Databas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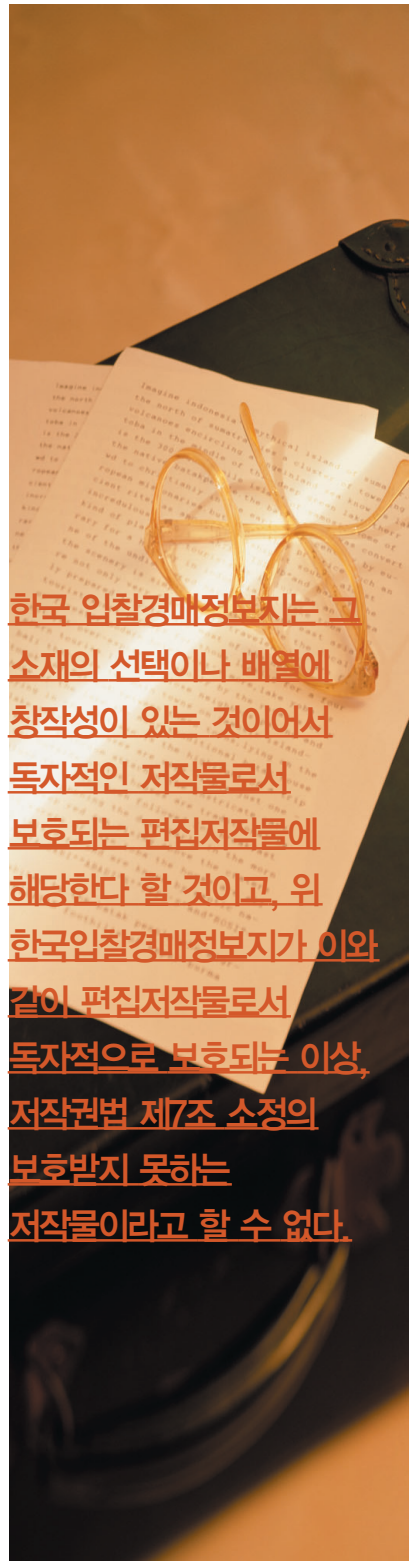
한국입찰경매정보지 사건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40 판결 -

이 사건은 입찰경매정보지를 구성하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을 인정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 본 사례이다.

피고인들이 무단복제했다는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경매정보' 지는 법원계 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소재지·종별·면적·최저경매가로 구분해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준공일자·입주자·임차금·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해 수록했다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

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이상,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Bay vs Bidder's Edge

- eBay, Inc. vs. Bidder's Edge, Inc., 100 F.Supp.2d 1058 (N.D.Cal, 2000) -

이 사건은 인터넷 경매를 위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해 자동화된 검색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웹 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무단침범의 법리를 적용한 미국 판례이다.

원고 eBay는 세계 최대의 P2P 웹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약 700만명의 이용자가 등록돼 있으며 약 300만개의 물건에 대해 매일 1,000만건의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원고는 골동품, 컴퓨터, 인형 등 약 2,500개 이상의 항목을 분류해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항목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는 eBay를 포함해 300여개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로부터 경매제품들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경매 사이트로부터 최신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동 검색용 로봇 프로그램(software robot)을 사용했다. 이러한 피고의 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원고는 유료화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고,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로봇 프로그램의 이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Bay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경매 검색 결과를 추출하자 원고는 피고의 무단접속 및 검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북가주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로봇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웹사이트에 침입해 검색함으로써 원고의 컴퓨터시스템 처리능력이 저하되고 과부하가 일어나 기능불량이나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로 인해 진정한 이용자의 경매참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무단침범에 해당되며, eBay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eBay의 경매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